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16 선고 2022가단1233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2. 16.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1. 2.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4,966,5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966,5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1. 1. 14. D 주식회사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2012. 1.경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그 후 C가 위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원고가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379865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8. '피고(C)는 원고에게 17,011,200원과 그 중 10,990,575원에 대하여 2012.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2014. 5. 23. 확정되었다.

라. 2022. 3. 23.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원금 10,990,575원과 이자 등 28,850,909원 등 합계 39,841,484원이다.

마. 한편, E는 2021. 2. 경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C, 피고, F이 있다.

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소유인데, 망인이 사망한 후 2021. 2. 15.경 피고와 C, F은 이 사건 주택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21. 5. 2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21. 2.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8,000,000원, 근저당권자 G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등기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21. 7. 30.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2021. 7. 30.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14,100,444원이었다.

아. 2021. 7. 9.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H에게 매매대금 1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30.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는,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유일한 부동산이자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1/3 소유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주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G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으로서 17,011,200원 및 그 중 10,990,575원에 대하여 2012.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한편,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의 1/3 소유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2021년경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14,000,000원인데 비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채권최고액 138,000,000원, 근저당권자 G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금전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C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주택의 1/3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인 2021. 2. 15.경의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143,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와 가까운 2021. 7. 30.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G조합 명의로의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이 114,100,444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시가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G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금전적 가치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 피고가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에게 그 법률행위 당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C의 언니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가 이 사건 주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악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또한, C가 부친인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합계 321,000,732원을 사전증여받았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C가 추가로 지급받을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생전에 C가 망인으로부터 합계 321,000,732원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에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택 중 C의 상속지분(1/3)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1. 30.경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219,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는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인 219,000,000원에서 말소된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인 114,100,44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04,899,556원 중 C의 상속분(1/3)에 해당하는 금액인 34,966,518원(=104,899,556원 x 1/3)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39,841,484원(2022. 3. 23. 기준) 중 더 적은 금액인 34,966,518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이므로 34,966,51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34,966,5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웅철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 지붕

6층 공동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59.8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인천광역시 서구

대 249.6㎡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비율 : 249.6 분의 22.68

- 이

상 -

